

심의결과 위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안의자
제51호	제15차	1989. 7. 20	홍재길·김건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외관계 한국은행법 제65조

법규 조항

제의 취지: 무역어음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일반에게 무역어음을
매출하는 경우 적용할 금리의 최고수준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상업어음
일반매출 최고이율을 등 무역어음 일반매출 최고이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조정하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사항>

제외 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65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

현	형	개	정	(안)	비	고																		
제 1조 ~ 제 5조 (생 략)		제 1조 ~ 제 5조 (현행과 같음)																						
< 별 표 >		< 별 표 >																						
수신이자 및 기타 자금금의 최고율		수신이자 및 기타 자금금의 최고율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이 율</th></tr> <tr> <td>1. ~ 13. (생 략)</td><td>(생 략)</td></tr> <tr> <td>14. 상업어음 일반매출</td><td>연 6.0%</td></tr> <tr> <td>(수신이자)</td><td>(수신이자)</td></tr> </table>		구 분	이 율	1. ~ 13. (생 략)	(생 략)	14. 상업어음 일반매출	연 6.0%	(수신이자)	(수신이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이 율</th></tr> <tr> <td>1. ~ 13.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14. 상업어음 일반매출</td><td>연 8.5%</td></tr> <tr> <td>15. 무역어음 일반매출</td><td>연 8.5%</td></tr> <tr> <td></td><td>다만, 만기가 91일 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유적으로 결정</td></tr> </table>			구 분	이 율	1.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상업어음 일반매출	연 8.5%	15. 무역어음 일반매출	연 8.5%		다만, 만기가 91일 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유적으로 결정	— 상업어음 일반매출 최고이율 인상조정 — 무역어음 일반매출 최고이율 규정	
구 분	이 율																							
1. ~ 13. (생 략)	(생 략)																							
14. 상업어음 일반매출	연 6.0%																							
(수신이자)	(수신이자)																							
구 분	이 율																							
1.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상업어음 일반매출	연 8.5%																							
15. 무역어음 일반매출	연 8.5%																							
	다만, 만기가 91일 이상이고 액면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유적으로 결정																							
(수신이자)		부 칙			— 부칙 신설																			
		이 규정은 1989. 8. 1. 부터 시행한다.																						